

2025-1학기 유고결석 처리 안내

1. 유고결석 신청기간 2025.03.04.(화) ~ 2025.06.16.(월)

★ 중간고사 및 기말고사 기간은 신청 불가

– 중간고사 (2025.04.22.~ 2025.04.28.)

– 기말고사 (2025.06.10.~ 2025.06.16.)

2. 유고결석 사유별 제출 증빙서류

호	유고결석 사유	허용기간 (공휴일 포함)	제출 증빙서류	비고
1	부모, 배우자, 자녀의 사망	7일	– 사망진단서 – 가족관계확인서류	– 학생 본인과 가족관계 확인 가능 자료 – [대한민국법원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] 출력가능
2	형제자매, 조부모, 외조부모의 사망	3일	– 사망진단서 – 가족관계확인서류	– 학생 본인과 가족관계 확인 가능 자료 – [대한민국법원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] 출력가능
3	본인 결혼	7일	– 청첩장 혹은 가족관계확인서류	
4	본인의 입원 및 치료기간	2주이내	– 입원확인서 – 진료비영수증	– 병원에 요청. – 카드영수증, 약봉투 불가
5	징병검사·징소집(복무기간 제외)에 응할 때	해당기간	– 관련증빙서류	ex) 신체검사 → 신체검사 통지서 군면접 → 면접정보, 날짜, 시간, 본인 증빙가능한 서류
7	국내·외 행사 참가	해당기간	– 관련증빙서류	– 참가 확인이 가능한 증빙서류 – 교내주관 행사는 공문으로 갈음 – 개인적 행사 참가 미인정

8	체육특기자의 대회출전 (국가대표는 소집에 따른 훈련 포함)		참가기간	- 관련증빙서류	
9	질병	9-1. 질병으로 등교가 불가능한 경우	1일 1회 (생리: 월 1회) / 한 학기 최대 2회	- 진료확인서 - 진료비영수증 - 생리 증빙서류 X(당일 신청만 가능) - 카드영수증, 약봉투 불가	
10	조기취업으로 출석이 불가능한 경우 (8학기 이상 재학중인 졸업예정자에 한함) (졸업학점 130인 경우, 105이상 취득)		해당기간	1 단계 -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- 재직증명서 - 성적증명서 2 단계 -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- 재직증명서 - 성적증명서 - 고용보험자격확인서(추가)	- 사유발생 즉시 1회 - 기말시험 전 신청 당일 일자 기준으로 발급한 서류 재제출 1회 - 참고사항1) - 인정불가, 중도퇴직자, 중도이직자, 참고사항2)
11	폐강으로 인한 수강정정		해당일자	- 증빙서류 없음 - 타이거즈 신청만 진행	
12	법정감염병		해당기간	- 양성판정진단서류 (격리기간 0) 보건소 등 관련 기관에서 발급한 격리 또는 분리치료에 해당하는 공식 서류 (격리기간 또는 분리 기간 반드시 명시)	

- 1) - 2단계 신청으로 최종 승인 확정되며, 최종 승인 건에 대하여 최종 출석 인정
 - 2단계 서류 미제출 시 유고결석 인정 불가 (단, 중도퇴직 혹은 이직사유 발생할 경우 즉시 통보하여야 함.)

- 2) 1. 인정불가: 4대 사회보험이 가입되지 않는 경우
 (ex. 고용보험이 가입되지 않은 경우: 본인이 대표자인 경우(창업), 프리랜서, 단순 아르바이트, 보호자가 대표자인 경우 등)
 2. 중도 퇴직자: 경력증명서 보완하여 2단계 신청으로 해당기간 유고결석 신청
 3. 중도 이직자: 1단계 신청 재직 기관의 경력증명서 및 이직 기관의 재직증명서 등 추가 제출

3. 유고결석 참고사항

★ 유고결석 발생 **14일** 안으로 신청 완료 (개정)

★ 증빙서류 등이 미비한 경우 반려 (학생에게 반려) 가능하며, 보완이 없거나 미비한 경우 승인 불가.

★ 유고결석은 가상강좌, MOOC 강좌 등 원격수업에는 적용 불가

★ 유고결석 사유로 인한 출석인정 시간은 총 수업시간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음.(10호에 의한 경우는 제외)

★ 제출 또는 업로드 한 증빙서류가 위조 또는 변조된 것일 경우 해당 교과목 실격(**F**)처리

★ 교과목 담당교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, 유고결석 허용기간 동안 해당 학생에게 정보통신 매체를 통한 교육 및 과제를 부여할 수 있음. [학업성적평가규정 제 3조의 2 (유고결석) ③항]